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2년 7월20일(금)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일 정 표

→ □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토론회 진행 순서

사회 : 김수경(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원장)

시간	진행내용
13:30~14:00	◆ 참가자 등록
14:00~14:30	◆ 개회식 개회사 : 서상기(국회의원) 환영사 : 함인석(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회장) 축 사
14:30~15:00	◆ 발표 이형규(수업목적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15:00~16:00	◆ 토론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광동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 국장) ○ 김재금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과장) ○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16:00~16:30	◆ 자유토론 및 폐회

[개회사]

- 서상기 (국회의원) 1

[환영사]

-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3

[발 표]

- 이형규 (수업목적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 7

[토 론]

-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
- ◆ 곽동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36
- ◆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49
- ◆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 국장) 68
- ◆ 김재금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과장) 75
- ◆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85

개 회 사

국회의원 서 상 기
국회정보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상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학 교육의 여러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좋은 안을 찾고자 함께 토론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이형규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함인석 회장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님,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박영규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최근 우리 교육의 주요 현안중 하나인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대학에서 이용되는 강의자료에 대해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위 제도의 시행을 놓고 여러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4월 28일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고등교육 교육기관은 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교육 기관이 권리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대학수업에서 자료의 공유를 저해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 기준을 따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즉 대학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도서 등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저작권을 보호하되, 대학의 교수들은 저작권자인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이므로 그들의 동의를 통한 무료 사용을 주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교육의 발전을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교육의 현안인 본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바, 현 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대학 교육에 사용되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안들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합 인 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오늘 존경하는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수업목적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 하에 열리게 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 질적 제고의 방안 모색은 고등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아, 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정부와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이슈 중 하나는, 21세기 핵심과제로서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의 기여라는 대학의 책무성과 함께 그 사회적 기반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의 생산은 대학교육을 통해 장려되어야 하고 동시에, 생산된 지식은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원의 공유운동에서처럼 지식 나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강의를 공개하는 등 이를 실천하려는 사회공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들은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사회적 책무성의 실현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지식 나눔과 지식 기부의 일환으로 학술 저작물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하여금 전국 각 대학의 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각 대학은 “개별이용방식(이용량에 따른 지급)”과 “포괄이용방식(학생수에 따른 지급)” 중 어느 한 방식을 선택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매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나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주장하는 지식 생산의 원천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학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교수들은 저작권자인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이므로, 대학 수업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업자료들의 저작자들인 대학교수 56,668명(2012년 3월 2일 기준)이 오히려 본인의 자료가 대학 수업에서 무료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무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대학들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되, 더 공정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

해 공정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그에 따른 무료 이용 등 가능한 한 교육기관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는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들은 과거 3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함께 2012년 평균 대학 등록금 5% 인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대학의 재정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학들은 등록금이 대학교육 본연의 과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이견이 많은 현재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입장과 고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을 포함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두가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해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다 긴 호흡과 넓은 안목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발 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형 규

수업목적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I.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 개요

1.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음.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제2항).
- 대학은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하여야 함(제4항).
-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제5항).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8항).
- 대학생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징수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제3항).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 문화관광체육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에 대한 대학 측의 개선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2012년 4월 27일 일방적으로 개정 고시를 발표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신규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

	개정 전	개정 후
종량 방식 (중전, 개별이용 방식)	저작물의 이용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어문·이미지 등: A4 1쪽 분량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저작물의 이용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어문: <u>A4 1쪽 분량당 7.7원</u> - <u>파워포인트 1매당 3.8원</u> ○ <u>이미지: 1건당 7.7원</u>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u>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u>
포괄 방식	학생 수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방식 ○ 학생 1인당 4,190원	학생 수에 따른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방식,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2014년까지 할인) ○ 일반대 3,132원 ○ 전문대 2,840원 ○ 원격대 2,684원

3.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요구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5월 25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약정체결 안내(복사전송 2012-590)’ 공문을 통해, 2012년 6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보상금 산정방식(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을 선택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함.

- 고시에 따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결정한다고 통지함.
- 7월 5일자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6월 30일까지 보상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상금 산정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하면서, 7월 13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
- “종량방식”(개별이용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으로, ‘15년부터 100% 적용을 목표로 하여 ‘11년 60%, ‘12년 70%, ‘13년 80%, ‘14년 90%의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

Ⅱ. 주요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 미국 저작권법상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은 저작권 제한의 일반규정인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4 가지 판단기준
 -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을 포함한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질,
 -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상당성,
 -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위한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복제 가이드라인
- 교사(교수)가 학문적인 연구, 강의 및 강의준비를 하기 위하여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일정 부분(예컨대, 책의 한 장(章), 정기간행물의 논문 한 편)에 대하여 1부의 복제를 허용
 -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생 1인당 1부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부의 복제도 허용
 - 구체적 예시
 - 시(詩)는 250단어 이내,
 - 2,500 단어 보다 짧은 산문인 경우에는 전문,
 - 2,500 단어 이상의 산문인 경우에는 1,000 단어 또는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1인당 1부를 넘지 않는 부수의 복제

2. 독일

- 저작물의 일부분, 근소한 범위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 발행 후에 편집물에 수록되어 많은 저작자의 저작물이 모여져 그 성질상 단지 학교, 비영리교육 및 재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시설이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편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 허용(독일 저작권법 제46조)
- 사전 통지의무, 보상금 지급의무 있음,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3. 일본

- 초·중등교육기관과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 복제 가능,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일본 저작권법 제35조).
- 복제의 부수는 통상의 1학급의 사람수와 담임하는 자의 합을 한도(초중고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기관이외의 경우, 1학급의 사람수는 대개 50명 정도 기준)
- 원격수업은 현장 수업과 동시전송에 한하여 허용

4. 호주

- 호주 저작권법상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과 그에 따른 저작권의 제한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보상금 징수 없이 저작물 이용이 자유로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은 허락되지만 보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자율적 이용계약에 의한 경우
- 보상금 지급 없는 공정이용의 예
 - 어문저작물 2면 이내
 - 저작물이 200면 이상인 경우 총면수의 1% 이내

Ⅲ.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

-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복사전송권 행사 및 미분배보상금 사용 규정, 부당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징수기준과 불합리한 이용보상금 분배제도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함.

1. 저작법상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복사전송권 행사 규정의 위헌성

- 저작권법상 저작자인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저작물이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사유재산권인 복사전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고,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음(법 제25조 제5항).
- 사유재산권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도 사유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도 저작자인 개인 또는 단체는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거나 신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도 있음.
 - 저작자가 스스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원한다면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만을 근거로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저작자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이용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저작자가 저작권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저작자가 스스로 복사전송권에 관한 신탁계약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복사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사유재산권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유재산권의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음.
- 정부가 특정한 사법인을 저작권자의 신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저작권자의 직접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임.

2. 저작권법상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미분배 이용보상금 사용 규정의 위헌성

-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의 수탁기관으로서 신탁된 저작재산권의 이용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자인 저작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 저작권법은 사유재산권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보상금 분배공고 후 3년만 경과하면 수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징수한 이용보상금 중 미분배금액을 공익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함(법 제25조 제8항).
- 공익목적은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미분배 이용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징수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공익목적이란 애매한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여야 할 수탁자로서의 수임업무를 소홀히 하게 할 우려도 있음.

3. 보상금 산출기준의 합리성과 설득력 결여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고시’를 통하여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가 매년 학생 1인당 4,190원씩(2012년 고시, 3,132원) 납부하든지 또는 복사 A4지 1매당 7.7원씩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산업연구원의 최봉현 연구자 1인의 보고서만을 토대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바, 이 보고서는 전국 4년제 및 2년제 50개 대학(일반대 25개, 전문대20개, 사이버대 5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 대학의 교수 10명씩(인문:자연:예체능 각 4:4:2) 총 500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임.
- 표본조사 응답자의 79.4%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한 것(해당 보고서 39쪽)이어서 신뢰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표본조사에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보상금징수를 위한 조사로서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학 측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서울대 정상조 교수팀의 연구결과(포괄방식의 경우 학생 1인당 800원이 적정함)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상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4. 보상금 산출기준에 공정이용의 미반영

-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정이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법정 절차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도록 함.
-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도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의 종량방식에 의한 보상금 산정에서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소한 부분도 이용보상금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이것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 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경우 또는 CCL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물 이용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5. 저작권자인 교수 5만 6천 6백 여명의 무료이용 동의 미반영

- 대학 수업에서는 저작권자이면서 강의담당자인 대학교수들의 저작물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저작권자이며 동시에 수업담당자인 5만 6천 6백 여명의 대학교수들이 본인의 저작물을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대학교수들의 무료이용에 관한 포괄적 동의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만든 개별적 권리포기방식으로만 무료이용 동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저작자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스스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사유재산권처분마저 제3자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임.
- 대학교수들이 본인의 저작물을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무료사용에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금액 산출에서 제외되어야 함.

6. 이용보상금 징수에 관한 법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결여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 저작물이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에 대하여만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정하여 보상금 지급약정 체결을 요구할 뿐이고, 공무원교육연수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지도 않고, 보상금 지급약정 체결을 요구하지도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한 수범자에 대하여 법의 준수를 강요하고, 다른 수범자에 대하여는 법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법의 집행을 하고 있음.

7.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보상금(저작권료)분배의 한계

- 징수한 저작물 이용보상금(저작권료)은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어야 함.
 - 이미 징수한 저작물 이용보상금(저작권료)도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징수한 교과용도서 보상금 108억 3천 3백만원 중 60%가 넘는 67억 4천 2백만원이 미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음(전병현 국회의원, “100억대 국정교과서 저작권료 징수, 2/3는 저작권자에 돌려주지도 않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3).
 - 교과용도서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저작권자는 초·중등학교의 국정도서 또는 검인정도서에 대부분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60% 이상의 보상금이 미분배됨,
-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지난 7년간(2004년~2010년) 징수한 ‘도서관보상금’ 217,085,000원 중에서 저작권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겨우 전체의 1.8%인 3,873,000원이고 그 밖에 수수료 1,596,000원(전체의 0.7%)을 제외하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211,614,000원이 미분배금액으로 남아 있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수업보상금제도의 타당성 분석과 정책방향, 2012년 대도연 제5차 정기총회 참고자료”, 2012. 6. 4, 5쪽).
 - 도서관보상금의 저작권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신청하여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7년간의 분배율이 징수된 도서관보상금의 1.8%에 불과함.
- 현행 이용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방식은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분배될 수도 없음.
 - 대학이 종량방식에 의한 하면 이용보상금 지급을 하려면 저작물의 이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보상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포괄방식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작권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이용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분배될 수 없음.

- 저작물 이용보상금(저작권료)이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보상금분 배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8. 수업목적 이용 복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용료의 이중 징수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및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따라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복사 또는 전송업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복사업소로부터 징수하는 연간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 사용료(1면당 5원)*대당 1일복사량(800면 기준)*월 영업 일수(25일 기준)*년 영업 월수(9월 기준)*저작물 복사비율(50% 기준)*점포 등급(100 - 50%)*영리(100%) 또는 비영리(60%)*복사기 대수의 산식으로 산정됨.
- 복사업소에 설치된 유·무인 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소재지, 설치목적, 설치위치에 따라 각각 100%에서 50%까지로 구분됨.
 - 서울소재 일반대학 내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복사업소는 점포등급이 100%에 해당됨.
- 저작물의 복사와 관련하여 복사업소가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복사를 의뢰할 때 지급하는 복사료에 포함됨.
- 대학이나 교수가 학생들을 위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의 복사는 대부분 대학내 복사업소에서 이루어짐.
-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사하여 이용하는 경우 복사료에 포함된 저작권사용료의 지급과 이용보상금의 지급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됨
 - 이것은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재를 구입한 경우와 비교하면 분명함.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재의 책값에는 출판사가 지급한 인세라고 하는 저작권

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이 이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업소에 저작권사용료가 포함된 복사료를 지급하고 또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명목 하에 다시 이용보상금을 지급하게 됨.

○ 결국 대학이 저작물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게 됨.

9. 보상금 징수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차별

○ 초·중·고등학교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고 있으나,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과함(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 교육의 공익적 성격 고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차별 취급 부당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교육 또는 수업 목적 이용저작물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차별 취급 없음.
- 교육정책적 측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한계,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부담은 등록금 인상 요인

IV. 저작권법 개정 및 고시개정 추진 경과

1.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개정 추진

○ 2011. 12. 30, 저작권법 개정안(의안번호 14471호) 서상기 의원(대표)·정두언 의원·원희목 의원·김세연 의원·박보환 의원·조전혁 의원·조진래 의원·임해규 의원·김선동 의원·박영아 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 제안이유

- 현행 「저작권법」에서 대학이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는 교육(수업 포함) 자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수업 공개 활성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요구가 있어 왔음.
- 대학수업 자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행주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설명에는 징수주체, 징수대상, 징수액의 근거, 저작권 보상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특히, 대학 수업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은 대학교수가 저작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수 간 수업목적으로 자료 무료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이며, 더욱이 대학교수 강의의 공개가 활성화되고 있어 2009년 대비 2010년 강의 공개 실적이 20배 증가되는 추세임.
- 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자 함.

○ 신구조문대비표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개정안)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u>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유아교육법</u>」, 「<u>초·중등교육법</u>」 또는 「<u>고등교육법</u>」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 2012. 5. 29, 개정안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에 의하여 폐기

2. 유관기관과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개정을 위한 협의

-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대표 및 저작권법 전문가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함.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협의(2011. 9. 16)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담당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등과 협의(2012. 2. 2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간담회(2012. 4. 10)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실장과 협의(2012. 4. 25)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문(2012. 5. 7)

3.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고시개정 요청

- 2012. 3. 19,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2012. 4. 19,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의 문제점 및 고시 개정 요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신을 받고 고시 재개정 요청을 함
- 문화체육관광부(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상금액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산정에서 외국의 법은 물론, 우리 저작권법도 무료이용을 인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줄 것과 5만 6천 6백 여명의 대학교수가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무료이용 동의한 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V.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1. 저작권법 제25조 개정 청원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도록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의 개정 입법청원을 하고자 함
-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사유재산권인 복사전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는 없고,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사유재산권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
- 특히, 저작자가 저작권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저작자가 스스로 복사전송권에 관한 신탁계약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복사전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함(법 제25조 제5항).

- 사유재산권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보상금 분배공고 후 3년만 경과하면 수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미분배 이용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함(법 제25조 제8항).
-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의 개정을 청원하고자 함.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재개정 추진

- 아울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협의체는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부가 대학 측의 개선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의 문제점을 알리고 재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투 론



- 안호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곽동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 김동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 국장)
- 김재금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과장)
-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 효 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이용의 규모가 적지 않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손실 위험 존재
- 교육목적이라는 공익성만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는 타당하지 않음
- 교육비 부담을 위한 국가사회의 능력,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현황 및 기회, 신탁관리제도의 운영현실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접근 필요

2. 1957년 제정 저작권법

- 교과용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수집하는 것 → 비침해행위
- 각본 또는 악보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공연하거나 공연을 방송하는 것 → 비침해행위
- 위의 모든 경우 보상금 지급의무 없었음

3. 1986년 전부개정 저작권법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 허용
 - 원칙: 보상금 지급의무, 면제: 검·인정 교과서
 - ▶ 면제 이유: 국가예산 내지 학부모의 부담 가중

- 교육기관에서 수업시 저작물 이용 허용
 - 원칙: 보상금 지급의무, 면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 ▶ 법률은 있었으나 미 집행, 대학 등에 대한 보상금 징수 없었음

4. 1994년 개정 저작권법

-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면제규정 삭제, 5년 유예, 1999.7.1.부터 시행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수업시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의무 여전히 면제
-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지정단체를 통한 청구제도 없었음
 - 실제로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괄 수령하여 개별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사실 법률상 근거 없는 수령?)

5. 2006년 전부개정 저작권법

-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 단, 보상금청구권은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 행사
 - 2007.7. 교육기관의 복제 등 보상금 수령단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선정
 - 2008.3.3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 ▶ 지정조건
 -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2013년에 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와 대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경우 국가 등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교육부의 요청으로 면제
 -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의무교육으로 공익성 인정된다는 이유
 - 그러나, 국가의 재정부담이나 공익성만으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참여이익의 박탈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움
 - 국가의 저작권경시행위

7.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과 대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보상금 징수 현황 및 계획은?

8. 국제협약상 의무위반 여부

- 베른협약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 구체적 요건은 각국의 입법에 일임
- 보상금의 징수 여부, 징수의 범위와 방법(문화부 등의 지정 기준, 당사자간의 협상, 부과금제도 등)은 각국의 입법정책

9.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지위

-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작물의 일부분’, 전부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 안 됨
- 전부 이용에 대해서는 각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계약에 의한 허락 필요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모든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지는 못함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만을 신탁 받고 있음
 - 복사(Reprography) 이외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 협회는 신탁받은 권리가 없음 → 계약체결의 권한 없음
- 수업목적 보상금만 내면 향후 대학에서 마음 놓고 저작물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 내지 기망

10. 보상금징수의 목적(저작자를 위한 제도, 제도를 위한 제도)

- 2005년-2009년 사이 징수된 교과용도서 보상금 중 62%(총 징수액 108억원 중 67억원)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분배(출처: 2009년 국정 감사 보도자료)

〈2011년도 교과용도서 보상금 징수 및 분배현황〉

(출처: 정보공개청구)

2011년도 보상금 징수 실적

(단위: 천원,천,천)

구분	일자	징수액	책수	저작물 건수	비고
국정	2011. 04. 29	458,228	383	24,213	
	2011. 10. 31	273,357	48	1,455	
검정(조합 4처)	2011. 05. 26	1,792,580	1,722	133,275	
인정(48처)	연중	53,470	218	13,897	
합계		2,577,635	2,371	172,840	

※ 인정도서는 2011년 이용분에 대하여 징수

2011년도 보상금 분배 실적

(가) 2010년도 이용분 보상금 분배

(단위: 천원)

내역	저작자수	분배금액	비고
협회 직접	80	512,906	수시
단체분배	문예	161,408	연2회
	콤카	65,300	연2회
합계	1,103	739,614	

(나) 과년도 미분배보상금 분배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저작자수	분배금액	비고
협회 직접분배	2011.03.18	39	32,193	2000-2005년 국,검정 이용분
	2011.11.25	42	10,458	2000-2005년 국,검정 이용분
	상시	114	14,516	2005년 국,검정 이용분
	상시	358	183,695	2006~2009년 국,검정 이용분
합계		553	240,862	

- 교과용도서 보상금 2011년 총 징수액이 약 25억8천만원, 보상금의 분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약 5억1천만원,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통해 분배된 분배금은 약 2억3천만원
- 과년도 미분배보상금을 분배한 금액은 약 2억4천만원, 결국 2011년도 총 분배금은 약 9억8천만원으로 징수금 25억8천만원의 절반도 안 됨(2011년도 미분배액 약 16억원, 분배율 약 38%)
- 저작권자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수업목적 보상금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미분배 될 것으로 예상
 - 미분배보상금은 법률상 3년이 경과한 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사 문화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
 - 위 협회의 존재 이유가 자체가 ‘저작권자의 이익보호’라는 공익목적

11. 저작권제도의 취지

-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
- 저작물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로 귀속하여야 함
 - 저작물의 상당수는 대학사회에서 창출된 것
 - 수업목적 보상금은 대학에서 지급하게 될 것
 - 징수된 보상금은 대학사회로 환원되기 어려운 구조

12. 사적복제의 예외(공중용복사기)와 수업목적 보상금의 이중징수

- 현재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학교 내외의 복사점에 설치된 이른바 ‘공중용 복사기’)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해서도 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이 경우 저작권자(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부터 계약에 의한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 수업목적에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상당부분은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를 직접 배포하거나, 대학교 구내외의 복사점에 수업자료의 복사를 의뢰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임
 - 이 경우 수업자료의 복사는 대부분 ‘공중용 복사기’에 의하여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복사점운영자가 저작권자(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이미 지급한 상태임
- 결국 수업목적에 위한 보상금과 공중용 복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i) 전자는 저작재산권제한에 대한 보상금이고 후자는 계약에 의한 사용료라는 점, (ii) 전자는 지급의무의 주체가 교육기관이고 후자는 복사점운영자라는 점만 다를 뿐, 징수금액의 수령자는 저작권자(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고 위 보상금과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라는 점에서 이는 이중징수에 해당함
 - 저작권법제도와 실무가 우리보다 더 발달했다고 보는 독일¹⁾과 일본은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없고 복제기기보상금제도만 있기 때문에 이중징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1) 독일의 경우 수업목적에 위한 이용은 초·중·고등학교나 직업교육학교 등에서만 허용되고, 대학교의 경우에는 성인인 학생이 스스로 강의자료를 조달한다는 점(교재 구입이나 사적 복제 등)과 자칫 대량복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애초에 수업목적에 위한 이용이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사기에 대해서만 복제기기보상금을 지급하면 됨.

13. 나아갈 길?

- 저작물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수입원 및 불법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부담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
 - 저작물 출판 시장의 변화
 - 오프라인 출판사의 영업한계, 전자출판 기타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유통업자의 진입
 -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 출판사의 손실? 전자출판업자의 손실? 저작권관리단체의 이익? 저작권은 무제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막연한 인식?
- 대안의 모색 → 복제기기보상금제도
 - 1993년 및 1999년 저작권법개정초안(정부안), 2011년 저작권법개정안(의원 발의)에 포함
 - 국내 관련 산업의 열악한 환경, 물가 인상 등 현실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입법되지 못함
 - 1993년 개정안: 녹음기, 복사기, 테이프 등, 최초 판매 가액의 1/100 미만 범위 내에서 보상금 부과 → 당시 약 3백억원 징수 예상
 - 1999년 개정안: 디지털 녹음·녹화기 또는 매체, 최초 판매가액의 2/100 미만 범위 내에서 보상금 부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곽 동 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1.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표 주제인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함.

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천 과정

2.1 법령 체계도

상하위법

- 법률 저작권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2.7.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타법개정]
-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4.5,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 20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11.1.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6호, 2011.2.14, 제정]
- 고시 2012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12.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4호, 2012.1.1, 전부개정]
- 고시 2012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기준 [시행 2012.2.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6호, 2012.2.13, 제정]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시행 2010.12.1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
- 고시 교과용도서보상금기준 [시행 2008.3.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3호, 2008.3.13, 제정]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시행 2012.1.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5호, 2012.1.31, 제정]
- 고시 대형마트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시행 2012.1.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49호, 2012.1.1, 제정]
- 훈령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 2010.3.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1호, 2010.3.23, 전부개정]
- 고시 불법복제물(오피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46호, 2011.12.21, 제정]
- 예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운영규정 [시행 2008.7.17]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8호, 2008.7.17, 제정]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시행 2012.4.2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 2012.4.27, 일부개정]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시행 2010.1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36호, 2010.11.8, 제정]
- 예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시행 2011.4.1]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23호, 2011.4.1, 일부개정]
- 훈령 저작권법상 의무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시행 2009.1.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1호, 2009.1.12, 일부개정]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09.9.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6호, 2009.9.1, 일부개정]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 법률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1호, 2011.12.2, 일부개정]
-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26] [법률 제10962호, 2011.7.25, 일부개정]
- 법률 상표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3호, 2011.12.2, 일부개정]
- 법률 실용신안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4호, 2011.12.2, 일부개정]
- 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제정]
- 법률 특허법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7호, 2011.12.2, 일부개정]

2.2 법령 제정 및 개정이유

저작권법 [시행 1957.1.28] [법률 제432호, 1957.1.28, 제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 1987.7.1] [법률제3916호,1986.12.31,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 및 저작물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저작권관계 국제조약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1994.7.1] [법률 제4717호, 1994.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음반의 대여권제도의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연장 및 저작권침해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중 일부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1996.7.1][법률제5015호, 1995.1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995.1.1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2000.7.1][법률 제6134호, 2000.1.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저작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2003.7.1][법률 제6881호, 2003.5.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2005.1.17][법률제7233호, 2004.10.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2007.6.29] [법률제8101호,2006.12.28,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2009.9.26][법률제9529호,2009.3.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2009.7.23][법률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

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 2011.7.1] [법률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저작권법[시행2012.3.15] [법률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위조라벨 배포행위 등 저작권자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 상기 체계도 등에 나타난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의 본질 및 특징

- 정부 일반 행정 부서들 가운데 법령 체계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을 가장 많이 제·개정한 부서에 속할 정도로 저작권 관련 법규를 만들었음. 하지만, 법령 제정 및 개정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압력에 대한 국익 차원의 해법을 강구하려는 자세를 비롯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중재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물론 상대적으로 저작권자나 선진국의 요구에는 상기 사항에 대한 노

력 부족과는 달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음. (1957년, 1987년, 2007년은 비교적 양호함)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이 곳은 국민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담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천명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작권 담당부서는 저작권자나 대학관계자가 모두 함께 누리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대상의 모호성에 대하여

문체부는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정의하고 있음.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수업목적보상금’의 대상이 되는지 모호함.

-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다음의 경우에 공정한 이용에 해당함으로써 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

- (1)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목적상 필요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제25조제3항)
-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제28조)
- (3) 비영리 목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방송하는 경우(제29조제1항)
- (4)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제29조제2항)

- (5)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제30조)
- (6) 도서관이 이용자의 조사 연구를 위해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제31조제1항)
- (7) 도서관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자료를 복제·전송하는 경우(제31조제2항)
- (8) 학교의 각종 시험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제32조)

○ 그렇다면 교육 현장의 다음 사례들이 ‘수업목적보상금’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고자 함.

[사례1] A교수가 본인 강의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교재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교재를 교수 학생 모두가 구입했으므로 NO)
→ 만약 그 교재 안에 시인 B의 시 한편이 게재되었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교재의 저작자가 시인 B로부터 이용동의를 받았으므로 NO)

[사례2] A교수가 강의에서 도서관이 소장한 제3자의 논문(또는 이론)을 인용하여 강의하였다면 보상금대상이 되는가? ((2), (6)항의 적용으로 NO)

[사례3] A교수가 학생에게 특정 자료(어문자료, 영상자료, 음악자료, 미술자료 등)를 도서관의 ‘과제자료실’에서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제하여 다음 수업에 참석하게 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이고, (1), (6), (7)항의 적용으로 NO)

[사례4] A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목적으로 도서관이 소장한 DVD(영화 또는 동영상강의)를 도서관에서 함께 열람하고 토론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임으로 NO)
→ 도서관이 소장한 음반을 재생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을 경우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임으로 NO)

[사례5] A교수가 제3자의 비판매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교재로 사용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NO)

[사례6] A교수가 강의교재를 영상파일(ppt 파일 등)로 제작하는데 있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2), (6), (7)항의 적용으로 NO)

→ A교수가 위 강의교재를 학교의 서버에 업로드하여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강의교재의 저작권자는 A교수임으로 NO)

[사례7] 연극과 A교수가 실기시험을 위해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희곡(또는 시나리오)의 일부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연기하도록 하였다면 보상금 대상이 되는가? ((2), (8)항의 적용으로 NO)

- 위 사례가 ‘수업목적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옳다면, 단순히 ‘수업목적 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규정해야 함.

4.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의 타당성 분석과 정책방향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2.3.7.), pp.49-53을 참조함.

4.1 대학에서의 ‘수업보상금’ 징수와 교육 본질의 문제

저작권법은 제25조 제2항에 의해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서만 ‘수업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대학에만 ‘수업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육 또는 수업 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와 같이 고등교육기관(대학)에서도 ‘수업보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4.2 공정이용의 가이드라인 없이 ‘수업보상금’을 징수하는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보상금 지급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공정이용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자와 저작자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라면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부분 이용까지도 보상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는 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수업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가이드라인 및 보상액 기준을 결정해야 함.

4.3 『수업보상금』의 징수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만약 법이 보장한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나 ‘수업보상금’을 납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체부가 제시하는 보상금의 징수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1) ‘포괄이용방식’에 대하여

재학생 1인당 매년 4,190원씩(최근 2012.4.27 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2014년까지는 할인 금액 적용)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이 방식은 ‘저작물 이용’의 구체적 내역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분배할 수 없는 제도임. 따라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이 제도의 취지와 모순. 또한 이 제도는 법률이 보장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용이 있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미리 ‘수업보상금’을 징수하는 제도임. 이는 마치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소득세를 미리 부과하거나, 범행의 징후가 있다고 하여 사전에 징벌하는 것’과 같은 논리임.

⇒ 이 방식은 법리에 어긋나는 제도로써 논리 전개에 모순이 발생함.

(2) ‘개별이용방식’에 대하여

이 방식은 보상을 징수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 간에 상호 저작물 이용에 있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러나 이용 내역에 따라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분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이용방식’보다는 보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됨. 하지만, 이 방식은 어디까지가 공정이용의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공정이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보상을 징수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일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 따라서 앞에서 지적했듯이 ‘수업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미리 설정해야 함.

4.4 보상금 배분의 실상과 문제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난 7년간 징수한 ‘도서관보상금’ 중에서 저작권자에게 배분된 보상금은 징수액의 1.8%에 불과함.

‘도서관보상금’ 분배 실적 (2004~2010)

년 도	징수액 (천원)	배분액(천원)			미분배액(천원)
		수수료(30%)	분배금(70%)	계	
2004~2010	217,085	1,596 (0.7%)	3,873 (1.8%)	5,469 (2.5%)	211,614 (97.5%)

‘도서관보상금’ 배분 실적을 미루어 볼 때, ‘수업보상금’의 배분 실적도 지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보상금제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저작권 처리를 쉽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의도와 달리, 보상금 관리단체의 운영비를 보전하고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보상금제도’가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고 편리한 제도가 되도록 보상금 제도의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필요성이 있음.

4.5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을 징수하는 문제

저작물 중에는 저작자가 무상으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개방하고 싶으나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음.(‘묵시적 개방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묵시적 개방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작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관리신탁 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의사 표시가 없는 제3항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현행 보상금제도와는 차별화된 합리적인 저작권 처리 방법을 고안해야 함. 또한 저작권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수탁 저작물 여부와 저작권자의 요구내용을 정확하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5. 대학구성원들의 바람 및 최근 신문기사

- 대학구성원들은 모두 저작권을 준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진함.
 - 이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문체부가 이해 당사자인 대학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식 행위를 거쳤다는 주장 속에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함께 논의하고, 문체부가 중재하여 보상금의 산정방식, 저작권자 배분방법, 공정이용의 범위 설정 등을 명확히 한 후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음.
 - 대학구성원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만 납부하면, 해외 저작자의 국내 대학구성원에 대한 저작권 소송까지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일이 오히려 문체부가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음.
- 최근 국내외 신문기사 내용은 수업목적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에 대한 의문 해소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함.
 - 「수업목적 저작권 이용 보상금 제도, 신탁관리단체 배불리기 아닌가?」 정보공개센터 2012/05/24, <http://www.opengirok.or.kr/2995>

“현재까지 문광부와 복전협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추진해온 궤적을 보면 우선 징수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또한 발생하는 이득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리 또한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안>만 따지고 보면 창작자의 권리도, 사용자의 권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자체가 미국 눈치보기와 신탁관리단체들을 배불리기 위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 「英 "정부지원 연구 성과물, 인터넷 공개", 유럽,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정보 자유롭게 이용에 무게」

chosun.com, 파리=이성훈 특파원, 입력 : 2012.07.17 01:02

“데이비드 윌레츠 대학·과학부장관은 15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까지 대학과 기업, 개인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성과물은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세금이 들어간 연구물이라도 지금까지는 전문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인터넷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업적 목적으로도 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하생략 ……영국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폐단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활발하게 활용하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 론 문

김 동 현

(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

1. 토론에 들어가며

우리 저작권법에 대학을 포함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은 1986년 법 개정이 최초이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 전면 개정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저작물의 이용목적을 “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상”을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상”으로 변경하고, 둘째, 저작물 이용방법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를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으로 확대한 것이다. 셋째, 보상금 지급방법을 “교육기관이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를 “교육기관이 지정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법에 따르면 대학은 1986년 이후부터 보상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이나, 26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학이 교육목적이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1986년 최초 입법은 차치하더라도 현행 규정은 2006년 12월 개정, 2007년 6월에 시행되었으므로 무려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사실상 위법을 하고 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보상을 받을 권리자를 대변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용자인 개별대학의 의견은 물론, 대학협의체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년여를 공청

회 개최,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제도설명회, 제도안내 공문 및 자료 송부 등으로 이용자인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학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보상금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11년 4월 28일 보상금 지급기준이 최초로 고시된 이후에 각 대학에 약정 체결요청과 법적 절차의 진행을 예고한 상태임에도, 같은 해 9월 대학협의체와의 협이가 실시됨에 따라 “약정체결을 위한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대학협의체의 요구는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연구”까지도 수용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까지 협의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월에 대학협의체는 최초 협의와는 달리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자체연구 결과를 들어 보상금 지급 기준 감액만을 주장할 뿐 이전의 어떠한 협의내용도 결론을 맺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중에도 권리자들은 보상금 지급기준의 감액, 연도별 차등 적용, 공정이용 일부 도입에 수긍하는 등 양보를 거듭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4월 27일 수정된 보상금 지급기준이 고시된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2012년 4월 고시에 따라 또 다시 대학에 약정체결을 안내하였으나, 대학협의체 및 비대위가 대학에 약정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약정체결을 어렵게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수정된 고시는 보상금 지급기준은 물론, 약정체결 절차, 보상금 포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정을 미체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에 이른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만의 일이며, 그간의 권리자 양보와 희생, 기다림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은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간끌기에 끌려다닐 일이 아니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소송에 이르게 되면서 아쉬운 점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4년 전으로, 협의체가 수차례에 걸쳐 담당자 변경, 창구 변경, 협의 사항 번복 등으로 매번 새로운 논의로 일관하였기에 협의가 지연된 점과, 그간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대학협의체에서 대학 일선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전달하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일이 되고 있는 점이다. 대학협의체가 무엇을 권리자 단체와 협의하려 하였고, 누구를 대표하였는지 그리고 대표를 용인한 대학에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나, 물론, 개별대학이 판단할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의 활동에 대하여 「별첨자료·1」을 제출하여 관계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린다. 더불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일선 대학 담당자에게 부담을 드리하고자 함이 아니며, 수년간의 양보와 기다림 속에서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권리자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 발제문에 대하여

발제문에는 제도의 안내를 포함한 현황자료와 제도의 문제점 9가지, 법과 고시개정 추진에 대하여 적고 있으나, 모두다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적으면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한다. 또한, 법이나 고시에 정한 부분을 “일방적”이라거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보상금제도”등으로 내용상 다른 것을 혼용하고 있어 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항이므로 정정하여 혼란을 경계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개요부분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요구를 적으면서 “일방적인 산정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하면서”라고 한 부분은 보상금 고시에 따른 일을 마치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절차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간 협회가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대학들에 약정체결을 요청한 것이나, 이후 절차를 공지한 것은 관련법과 제도, 규정에 기초한 것이다. 약정체결 공문, 제도안내 자료 및 협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외국 주요 입법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바, 관련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을 소개하거나 누락, 오류도 발견된다. 참고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는“각 국의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제도 비교”를 소개한 책자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발제문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별첨자료·2**」(외국의 수업목적저작물 권리처리 현황표)로 대체하고자 한다. 각국은 신탁이나 보상금제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 기본적인 권리관리 체계도 다르고 이를 적용하는 분야도 다르다. 동일한 교육목적이라 할지라도 “교육목적”, “사적복제”, “사진복사”, “수업목적”등으로 나뉘어져 단순 또는 병합하여 적용된다. 그 중 일부분인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한하여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복제, 복사, 배포, 전송, 방송, 공연 까지 광범위한 이용을 보상금제도로 허락한 예는 없다. 외국과 우리의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바, 일부 내용까지 누락된 상황에서 이 부문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적은 부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토론으로 가름할 사항이어서 대체하고자 한다. 다만, 저작권신탁단체이며 보상금수령단체인 협회에서는 발제자가 적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더하고자 한다.

- (1) 저작권법상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복사전송권 행사 규정의 위헌성이라는 내용 중에는 “신탁제도”와 “보상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협회는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복사권과 전송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면서, 저작권자가 신탁하지 않은 저작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 “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권리자 전원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제자는 “사유재산권자는 법률 상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는데, 현재의 보상금제도인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재산권 제한”은 “특별한 제한”이 아니고 무엇이라 보는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외국에서도 보상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데 같은 맥락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요청한다.

- (2) 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대하여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미분배 이용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이라고 적어 마치 3년이 경과된 보상금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아무렇게나 무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8조는 3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을 법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바 없다. 미분배보상금을 관리하는 절차로서 관련한 정부부처, 권리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미분배보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선 논의한 후,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에도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집행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사례]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관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엔컬처(국정도서발행출판사) 및 한국검정교과서(검정교과서발

행출판사모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추천인 등 총9인 위원회로 운영 중

- (3) 보상금 산출기준의 합리성과 설득력 결여라고 적은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를 부정하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결과와 상이하다고 적고,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합리적인 보상금액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고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할 것인 바, 이를 제외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자 단체의 의견을 밝힌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보고서의 별첨 설문지 2페이지에서 직접 촬영(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한 본문 72페이지에서 “교수가 직접 타인의 사진을 찍어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적고 있는 데, 과연 이러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는 지 답해 주기를 바라며, 조사 설계부터 결과에 까지 오류가 가득한 연구결과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대학협의체는 이미 상기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권리자단체의 양해를 얻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란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로는 “대학이 만족할 때까지 조사하자”는 억측에 해당된다고 보여 질 뿐이다. 또한, 개정고시에는 실태조사의 실시와 반영에 대하여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하여 적정 보상을 받아야 하는 쪽은 권리자임에도 이용자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고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있는 바를 직시하여야 한다.

- (4) 보상금 산출기준의 공정이용 미반영에 대하여 적으면서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에서 공정이용의 적용은 가이드라인형태로 주어지는 권리와 이용자 타협의 산물이다. 국내에서 대학의 수업목적 공정이용 주장은 권리자에게는 수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감액을 외치는 일방적인 구호로 비칠 뿐이다. 이용자인 대학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권리와 협의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점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요청한다.
- (5) 저작권자인 교수 5만 6천 6백명의 무료이용 동의 미반영이라고 적은 부분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에 포함된 공정이용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시개정 협의과정에서 대학협의체가 무료이용동의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기에 관련 고시에 “보상금청구포기서”라는 양식이 제시되었다. 대학은 이에 따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또 다시 요건 불비한 무료이용동의서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5만 6천 6백명의 국내 교수가 저작물 무료이용을 동의하였으므로 보상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대학이 접근 가능한 공표된 국내외 저작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그 양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이 주장하는 무료이용 저작물은 공표된 국내외 모든 저작물 중에서 몇 %에 해당되는 것이며, 무슨 근거와 방법을 가지고 공정이용으로 보아 보상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견을 요청한다.
- (6) 이용보상금 징수에 관한 법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결여에 대하여 적고 있는 바 이는 수업목적보상금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자신의 영역인 수업목적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협조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문제를 알기알부 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도 대학스럽지 못하다.

- (7)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보상금(저작권료)분배의 한계에 대하여 적으면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미분배보상금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파악 없이 풍문정도를 발제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협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교과용도서나 도서관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볼 일이다. 발제에 대하여, 먼저,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대부분 명확히 나타나 있음에도 60% 이상의 보상금의 미분배”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교과용도서 실린 저작물의 작자를 알 수 없는 것은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데이터의 47%이다. 즉, 현재의 분배율로 역산하면 작자가 기재된 보상금의 82%를 분배하고 있으며,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한 도서발행자와 협력하여 권리자를 찾아 분배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도서관보상금에 대하여 “도서관보상금의 저작권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리자가 신청하여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7년간의 분배율이 보상금의 분배율이 1.8%에 불과함”이라고 적었으나, 도서관보상금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은 부분이라 하겠다. 도서관보상금은 DB를 구축한 도서관에서 저작권자를 파악하여 이용내역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분배율이 낮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한다. 2011년도에 납부된 도서관보상금은 2천2백만원이고 이용하는 도서관은 1,005개처이다. 연간 이용량은 판매용 열람 13,831회, 출력 6,779,682회이며, 분배할 대상자는 71,971명이다. 보상금액별로 1만원이상 지급자는 35명, 합계금액은

670,703원이다. 대부분의 권리자가 1만원 미만의 보상금지급대상이고 심지어 3원을 지급할 대상자도 있다. 분배를 하더라도 지급될 만한 금액을 가지고 연락하라는 것이 권리자의 항변이다. 제도 시행초기에 대학도서관계는 개별대학이 지급할 보상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전체적으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며 제도를 부정하고 법을 개정 하겠다고 한 바 있었다. 현재는 어떠한가? 도서관 1,005개처 중 대학도서관이 234개처 이고 납부 보상금 합계는 5,712,398원으로 대학 당 평균 약 24,000원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을 비교하면서 저작권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금분배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저작권법은 보상금 영역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내역과 보상금 지급의무를 두고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그러나, 대학이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이용내역을 조사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주장하므로 공청회를 비롯한 수많은 이해관계자협의를 통하여 포괄이용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즉, 대학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학협의체는 분배에 대하여 계속 의문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도 마친 것인데, 분배를 운운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한 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다.

- (8) 수업목적 이용복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의 이중 징수라고 적고 있는 바, 이는 공중용복사기에서의 복사와 보상금제도, 즉,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제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협회는 어문저작물의 복사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서 신탁받은 저작물 이외의 복사를 허락한 바도 없고, 1인 1부 10%이상은 이용허락을 초과한 복사로 규정하여 민형

사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 공표된 모든 저작물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필요하여 복사하거나 학생 수에 따라 여러 부 복사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제도의 중복 가능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가 이미 검토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에도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사이용 장소를 묻는 설문결과 약 92.36%가 유료복사점이 아닌 학교시설을 이용한다고 답하고 있으며(연구보고서 32p, 참조), 수업목적 어문저작물의 복사행위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서관보상금제도) 또는 이용료(복사이용계약에 의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복사에 대하여 보상금 적용 대상으로 산정하였다(연구보고서 56p. 참조)고 적고 있다. 이와 같으므로 저작권료 이중징수의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 (9) 보상금 징수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차별에 대하여 적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 수업에는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저작물이용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등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나 학생에게 수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현재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논의 중에 있다.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규정과 초·중·고등학교의 보상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이미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즉, 제도가 시행 된지 26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제도에 무임승차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법 시행 26년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간의 의무는 이행하였는가?

3. 질의

(1) 비대위는 왜 보상금 800원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가?

비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상금 기준연구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표본 크기가 작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신뢰도를 지적하여 자체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비대위의 자체연구 이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상금 기준연구 보고서를 무작정 비난하고만 있지, 자체연구의 합리성 및 근거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회의석상에서 그리고 저작권 단체명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서도 수차례 문의하였는데 단 한 번도 표본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한 적이 없었다. 자체적으로 연구하였다고 하는 800원에 대한 근거는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를 비난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비대위는 무슨 자격으로 제도거부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2012년도 개정고시에서는 보상금액을 58%(4,474원→1,879원)나 하향조정하고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비대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협회로 문의 전화를 한 대학 관계자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저작물이 수업에 사용되고 있더라’, ‘고시기준이 예상보다 많이 하향조정 됐다’며 놀라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대학이 왕따 될까 봐’ 약정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비대위는 무슨 자격으로 약정 체결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제도추진업무를 방해하는 것인가? 협회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저작권법상 보상금 약정 당사자는 협회와 개별 대학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대위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별 대학이 지게 된다. 비대위가 대학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은 무엇이며, 실체는 있는가?

(3) 무료이용동의서, 출판자가 허락한 것인가? 교재출판 대학이 모두 감당할 것인가?

저작자인 교수가 무료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출판물의 복제가 가능하다면 대학에서 유통 중인 책은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학생들은 책을 구입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불법 복제본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출판사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로 엄청난 수준의 피해를 당할 것이며, 결국에는 상당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이용되는 수많은 출판물에는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 출판사들은 저자와의 계약에 따라 출판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자이다. 무료이용 동의를 위해 어떠한 저자도 출판사와 협의하거나 요청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출판물을 복제하는 것은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출판물 무상, 무료 이용으로 우리나라 출판 산업이 고사되면 해외출판물이 범람하게 되어 그 피해는 대학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출판사가 사라지면 대학이 모든 출판물의 무료 출판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4) 비대위는 왜 5만 6천 6백명 교수의 무료이용동의서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비대위는 전국 대학교수 5만 6천 6백명으로부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무료이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 관련 단체 공동명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실물과 동의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무료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교수의 모든 저작물을 전국의 각 대학에서 무료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이 무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교수들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그 절차의 적절성 판단을 떠나,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동의서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대학교수에게 무료이용 동의를 요청하였다면 대학출판부가 발

행하는 모든 교재는 더욱 무료이용대상이 될 것인데, 이는 어떻게 되는가? 대학 출판부가 모두 동의하였는가? 동의한 대학출판부 저작물은 모두 무단복사를 하여도 되는가?

(5) 보상금제도를 없애고, 개별적으로 권리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대학협의체는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억울한 측면으로 보면 권리자가 할 소리임이 분명한데 억측이 도를 넘었다. 그간에 권리자들은 대학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 상황까지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대학이 현재와 같이 제도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보상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더 이상 제도 유지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적어도 민·형사상 소송을 통하여 불법적인 저작물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협의체가 주장하는 데로 “권리의 제한”이 위헌이라면 개인이 권리를 보호받도록 “제한을 해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이용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도 지급하고, 권리자가 불법이용으로 소송할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나 무상이용으로 항변하면 되지 않은가?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협의체는 수업목적보상금 제도를 없애자는 권리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가?

[별첨자료 1]

보상금제도 추진 경과

□ 제도 안내

1. 공청회 개최 : 4회(2009. 04. 03(고려대 삼성관), 2010. 01. 18-2011. 01. 26-2011. 01. 27(국립중앙박물관))

2. 보상금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대학 의견문의 : 3회(2010. 04. 07, 2012. 05. 11, 2011. 01. 14)
- 대학협의체 참석 회의개최 : 2회(2011. 04. 28, 2009. 09. 28, 대교협 등 참석)
* 복전협 → 대교협에 공식 질의(2009. 12. 09, 2010. 07. 15), 회신 없음

3. 제도 설명회

- 사이버외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제도 설명회(2010. 3. 09, 한국사이버외대 주최) / 사이버외대 소속 교수 및 직원
- 원격대학 소속 협의회 담당자 대상 제도 설명회(2010. 04. 26, 원격대학 주최) / 원격대학 소속 회원대학 콘텐츠 제작 담당자
- 전국 수업·학적(단과대학) 담당자 대상 제도 설명회(2010. 06. 17, 대교협 주최) / 전국대학 수업·학적 담당자
- 전국 교무·학사 행정 담당자 대상 제도 설명회(2010. 10. 20, 전문대교협 주최) / 전국전문대학 교수·학사 담당자
- 전국 원격대학협의회 콘텐츠 제작 담당자 대상 설명회(2010. 12. 14, 원대협 주최) / 원격대학 콘텐츠 제작 담당자
- 원격대학교육협의회 및 협회 공동 워크숍 개최(2011. 5. 26 ~ 5. 27)
- 전국 수업·학적 담당자 대상 제도 설명회(2011. 06. 02, 대교협 주최) / 전국대학 수업·학적 담당자

4. 계약체결 안내 공문 발송

- 약정체결 요청 1차(전국대학, 2011. 07. 22)
- 약정체결 요청 2차(전국대학, 2011. 08. 01)
- 대학 내 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적조치 예고(전국대학, 2011. 09. 01)
- 약정체결 요청(전국대학, 2012. 05. 25)

5. 제도 안내 홍보

- 안내자료 배포 : 4회(2010. 04. 09, 2011. 01. 10, 2011. 06. 27, 2012. 05. 25)
- 제도관련 제도 안내 Q&A 연재 : 12회(한국대학신문, 2011. 07. ~ 2011. 12.)

□ 이해관계자 협의

1. 제1차 이해관계자 협의

- 일시 및 장소 : 2011. 09. 16, 프레지던트 18층 동해
- 참석자 : 윤성천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이형규 교수(비대위), 김수경 부장, 박진숙 연구원(대교협), 박광국 교수(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유정욱 교수, 전민재 주임(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박정호 교수, 김영철 사무국장(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동현 사무국장, 송재학 팀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주요내용 : 보상금 기준 적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 제언

2. 제2차 이해관계자 협의

- 일시 : 2011. 10. 11, 문화체육관광부 제3회의실
- 참석자 : 윤성천 과장, 김규직 사무관, 이명진 주무관(문화체육관광부),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박광국 교수(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김영철 사무국장(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동현 사무국장, 송재학 팀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주요내용

- 반영 가능한 연구결과 제출시 필요한 경우 고시 수정, 최초 보상금 적용 시점 2011년, 보상금 기준 타당성에 대하여만 연구, 기간 중 계약체결 요청 및 소송 중지, 회의결과에 대하여 단체 날인 등을 전제로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연구수행 승인
- 추진일정 : 연구기간(2011. 10. 01 ~ 2011. 12 15), 당사자간 합의(2012. 01. 13 기한), 수정고시 검토(2012. 01. 31)
- * 협의결과에 대하여 대교협 측에서 날인 거부(원격대 날인, 2012. 10. 26)

3. 이용자 측면의 연구보고서 관련 개정고시 추진회의

- 일시 : 2012. 01. 09, 문화체육관광부 제3회의실
- 참석자 : 윤성천 과장, 김경영 사무관, 김효진 주무관(문화체육관광부), 김영곤 과장 외 1명(문화체육관광부), 김수경 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광국 교수(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유정욱 교수, 오병진 부장(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영철 사무국장(한국원격대학협의회) 최봉현 박사, 이영록 박사(외부 전문가), 김동현 사무국장, 송재학 팀장, 김준희 대리(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주요내용
 - 문화부에서는 최초 협의내용과 달라진 점(보상금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아닌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점), 비합리적인 연구결과의 도출(분석설계조차 제공하지 않은 실태조사결과를 이유로“현재 지급기준 20% 미만으로 조정될 것”만을 제시) 등의 사유로 인해 고시 수정시 반영 불가능한 입장 표명

4. 고시개정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2. 02. 29, 세종문화회관
- 참석자 : 임원선 국장, 김경영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이형규 교수, 안효
질 교수(비대위),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박정호 교수(한국원격대
학협의회),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주요사항 : 포괄이용방식 금액 협상

5. 고시개정 2차 회의

- 일시 : 2012. 04. 24, 세종문화회관
- 참석자 : 박순태 실장, 김경영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이형규 교수, 안효
질 교수(비대위), 김수경 부장(대학교육협의회),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
사전송권협회)
- 주요사항 : 포괄이용방식 이용금액 하향조정 및 연차별 조정계수 적용, 추
후 공정이용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상금액을 추가로 조정, 무
료이용동의서를 보상청구권 포기신청서로 변경하여 제출 등에 대해 논의

6.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2012. 04. 27)

[별첨자료 2]

외국의 수업목적 저작물 권리처리 현황표

국가	단체명	종류 및 형태	대상기관	징수기준	징수액
미국	CCC	〈어문, 사진〉 복사, 전송 (인트라넷 등)	유치원·초·중· 고등학교	〈개별〉 책자의 분야별로 금액이 제각각 이나 페이지 당 평균 복사비는 US\$11,09(₩11,726)	-
			전문대·대학· 대학원	〈포괄〉 학생 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금액 책정	-
	BMI	〈음악〉 복제, 전송	전문대·대학·대 학원	〈포괄〉 [학생수×3,24cent(₩345)]+[Radio Station수×US\$297(₩316,275)]+[RadioStation(part15)수×US\$225(₩239,602)]+[(Cable system)학생수×0,602cent(₩64)]	-
	ASCAP	〈음악〉 복제, 전송	전문대·대학· 대학원	〈포괄〉 [학생수×3,2cent(₩345)]+[학생수×0,602cent(₩64)]	-
Movie Licensing USA	〈영화〉 공연	유치원·초·중· 고등학교	〈개별〉 (상영 가능한 영화에 한하여)	-	
		공공도서관	US\$75 (₩80,000) / 1영화 1회 상영 일정 변경시 US\$25 (₩26,700) 추가	-	
영국	CLA	〈어문〉 복제, 복사	유치원·초·중· 고등학교, 대학·전문대·대 학원	〈포괄〉 1)초등학생: £ 0,97(₩1,653) 2)중·고등학생: £ 1,51(₩2,574) 3)대학생:£ 6,78(₩11,600) 〈내역〉 복사 : £ 5,42 (₩9,242) 스캔 : £ 0,74 (₩1,261) 디지털이용 : £ 0,62 (₩1,057)	₩182억원 ₩168억원 ₩105억원
				ERA	〈음악, 영상〉 라디오, TV방송물 의녹음, 녹화
호주	CAL	〈어문, 사진, 미술〉 복제:출력,CD/ DVD/디스크복사 전송:스캔, 인트라 넷, 교육관리시스 템, 이메일	초·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	*기준 1)일반텍스트:4cent(₩45) 2)단편소설:6cent(₩68) 3)미술/사진:8cent(₩90) 4)시 :8cent(₩90) 5)전시 :40cent(₩455) 〈포괄〉(법정허락)부과기준 대학생:AUS\$38(₩43,282/1인당) 대학수:약40개	₩579억원 ₩259억원 ₩32억원

국가	단체명	종류 및 형태	대상기관	징수기준	징수액
캐나다	access	〈어문〉 복사, 디지털복제	초·중·고등학교 전문대·대학·대학원, 성인어학교	〈포괄〉 1)학생수계산 :풀타임학생수+파트타임 학생수(1/3.5계산) 2)1)에서계산된전체학생수×CA\$3.58 (₩3,945) 3)추가요금 -절판도서:1page당 CA\$0.10(₩110) *최대 이용 가능금액 CA\$10.00(₩11,000) -신문:1page당 CA\$ 0.10(₩110)	-
독일	vg wort	〈어문〉 복사	전문대·대학·대학원	*사적복제보상금 부과 *조사금액은 일괄지급 산정방식 수령금액	EUR 810,000 (₩12억원)
프랑스	cfcopies	〈어문〉 복사, 디지털복제	전문대·대학·대학원	*복사 : 개별대학협정으로 금액산정, 1학생당 1) 1~100p:EUR2,32 (₩3,538) 2) 101~200p:EUR4,88 (₩7,443) 3) 200p이상:협상 * 디지털복제:교과부와 협정하여 금액 산정	복사 : EUR350,000 (₩5억원) 디지털복제 : EUR718,500 (₩11억원)

토 론 문

입 학 연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 국장

1. 들어가는 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크게 보아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는 절대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 둘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 셋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관계.

토론자의 견해로는 첫째 유형이 저작권의 원칙적인 모습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아무리 많은 보상을 제시한다고 해도 이용허락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 따라 첫째 유형이 저작권의 원칙적인 유형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셋째 유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저작권의 본질에 관해 어떠한 철학적 견해에 기댄다고 하더라도 부인하지 못할 전제라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적인 원칙이 된 3단계 테스트에 의하면,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저작물의 통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RIPs 협정 제13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WIPO저작권조약 제 1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제자의 발제문을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적어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대학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적극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수업목적이라고 해서 저작물을 전부 자유이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논의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할지에 있다고 할 것인데, 발제자의 문제점 지적은 수업목적 보상금을 내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제자의 지적들은 모두 비본질적이거나 억지성 논리에 기초한 것이니까요. 당장 “초등학교 등에서는 징수하지 않고 왜 대학만 징수하는가”라는 지적은 유치한 논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원래는 각급학교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에 관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일단 각급 학교에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은 저작권의 현저한 제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에 더 나아가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보상금마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한을 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저작권자가 1차 제한에 더해 2차적인 제한을 받은 것인데, 대학이 “왜 나는 2차적 제한까지 안 해주느냐”고 떼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권리자가 1차 제한까지 가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2차 제한까지 하느냐고 따져야 할 대목인 것이지요. 이것이야 말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발제자의 각 주장에 대한 반론

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유일한 수업목적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고,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점을 제쳐두고라도 이 문제제기는 이용자인 대학 측이 지적할 문제는 아닙니다. 권리자 측이 권리행사를 하는 방식이 각 개별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든, 아니면 단체를 통해 단체적으로 하든 이용자가 왜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속내를 추정해보면,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면 권리주장자의 수가 더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학 측이 지불할 보상금의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셈법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욱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단체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권리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일일이 개별 권리자와 보상금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보상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훨씬 줄이고, 이용관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체를 통해 일원적으로 보상금을 수수하는 것이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긍할만한 구조라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권리제한이라는 논리는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단체를 통해 하기 때문에 적게 받게 된다”라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용자인 대학에게 불리한 논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발제자는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역지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반대하려는 주장을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미분배 이용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꾸 권리자의 이익을 걱정하고 있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여 보상금을 징수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분배대상 권리자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상액 부분에 대하여 영원히 권리자를 찾을 때까지 보관해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법상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53조). 보상금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를 유실물에 빗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권리자를 찾기 위한 일정 기간의 노력에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보상금을 마냥 보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3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복전협이 취득한다는 것도 아니고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보상금 산출기준의 바탕이 된 표본조사가 신뢰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보상금징수를 위한 조사로서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상금 산출 기준을 위한 실태조사가 2008년부터 이루어졌고, 그 동안 10차례가 넘는 공청회가 열려왔습니다. 문화부가 마련한 산출기준이 문제가 있다면

대학 측은 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800원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지식의 전당인 대학 측이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주장을 펴도 되는 것인가요? 제반 연구에 의하더라도 지금 문화부 고시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금 기준은 선진 제 외국의 보상금 기준에 비춰 현저히 적은 액수이고, 권리자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나온 산물인 것입니다.

라. 보상금 산출기준에 공정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정이용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대학 측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미국판례법에 의해 발달된 이론으로 4가지 요소에 의해 개별적으로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일일이 위 4가지 요소를 대입하여 판단해보자는 것인가요? 그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인데, 개별 건마다 법원으로 들고가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그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더구나 미국의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제가 모두에서 말한 첫째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절차일뿐더러 쌍방에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 주장대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대학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4개 요소에는 (1)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질, (3)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율, (4)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중 (1)과 (4)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 저작물의 사용목적이 비영리적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정이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대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수업자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문이나 전문도서와 같이 독자층이 한정된 저작물이라면 시장대체 가능성 요건에 따라 공정이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 저작권자인 교수 5만 6천 6백 여명의 무료이용 동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발제자의 주장대로 진실로 그 5만 6600명의 저작권자가 무료이용 동의를 한 것이라면, 그 저작자 명단과 저작물의 내역을 공개하고, 복전협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이를 보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만약 5만 6600명의 저작권자의 무료동이가 실체가 없는 것이거나,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상 무료이용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5만 6600명의 저작권자가 무료이용동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비대위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 이용보상금 징수에 관한 법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차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모두에서 지적하였듯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억지논리로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사.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보상금(저작권료)분배의 한계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 역시 이용자 측인 대학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각 개별 권리자들이 제기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권리자측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를 본건 보상금 징수단계에서의 문제에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필리버스팅입니다.

어떻게 권리자를 잘 찾아내서 적절히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는 대학 측이 복전협과 함께 협력해서 분배율을 높이도록 고민할 문제이지, 징수단계에서 그것을 내세우며 보상금 지급 거부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수업목적 이용 복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용료의 이중 징수 주장에 대하여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토론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 결론

대학 측이(정확히는 비대위) 내세우는 보상금 징수 반대논리는 어느모로보나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여론과 정치권을 이용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속 지연시키려는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법리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원화된 수령단체를 통해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의 효율성,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 일치성에 비추어 그러한 징수구조 및 분배구조가 다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대학 측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지연전술을 버리고 보상에 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자인 대학 측이 일일이 이용내역을 보고하고 실사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용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교육기관에서 실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나 강사가 자신이 이용한 부분이 계량화되어 더 많은 이용에 위축효과를 가져올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포괄하여 보상금을 정하고 저작물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문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작물 이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면 개별이용방식으로 보상금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대학의 수업목적보상금

김 재 금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과장

□ 현황

- (보상금제도)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가능
 - 단, 저작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 이용 주체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문화부 고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 (납부방법) “개별이용방식” 및 “포괄이용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 (보상방식)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
 - *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 조동성 서울대 교수) : 저작권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단체
 -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물 이용 주체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문화부 고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해야 함

□ 주요쟁점

- 문화부의 개정고시(‘12.4.27)된 보상금 제도는 산정근거, 배분방식 등이 대학 현실에 부적합하여 대학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보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부담을 완화
 - 문화부 개정고시 포괄방식기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으로
 - ①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②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 ③ 원격대 1,610원(‘11)~2,684원(‘15)이지만,

- 대학측은 2011년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라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조정(대학교협 800원) 필요 주장

* 문화부는 2011년 고시기준(1인당 4190원)을 다시 개정하여 산정기준을 조정(1인당 3132원)하고, 연차별 조정계수까지 감안하였으므로 추가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

- 학교 수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초·중·고 및 대학교에 대한 구분이 불필요하므로 법개정

※ 신·구조문대비표(법령개정사항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u>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 ----- ----- ----- ----- 다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u>학교 이하의 학교에서</u>----- -----.</p>

□ 교과부 의견

<검토항목>

① 공정이용(fair use)

- 미국, 호주, 독일 등 외국의 경우 교육목적을 위해서 보상금 지급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단, 공

정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이용하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 정의되어있지 않고, 보상금 산정시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공정이용: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내의 이용

② 외국사례

- 보상금 제도 도입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통상 및 WTO 조치 등 국제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외국사례의 충분한 비교를 통해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정책연구마다 외국사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외국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문화부는 우리나라의 보상금제도가 대학이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허용하는 범위가 크며, 개별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대학에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

** 대학측은 보상금 제고가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과 달리 초중고와 대학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

③ 중복지급 가능성

- 저작물 복사와 관련하여 복사업소가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복사를 의뢰할 때 지급하는 복사료에 포함되므로 **수업목적 보상금과 이증으로 지급하게 됨**
- 이증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정의, 외국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중복지급 배제방안 검토 필요**

- 현재 고시된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화부와 대학 간 수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합리적 보상금 기준을 마련

⇒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도입 유예

- 이와 별도로 현재 대학가 불법복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부·대학 협조하에 **저작권 보호노력 강화**

※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해 당분간 보상금 제도를 유예한다고 해서 결코 저작권 보호 필요성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참고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7호(2011.4.28.)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납부방법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납부
6. 보상금 기준
 - 1) 보상금 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대학교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종량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포괄산정에 따른 비용절감과 연차별 조정계수 (2014년까지 할인)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을 참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1,879원('11)~3,132원('15) ○ 전문대 1,704원('11)~2,840원('15) ○ 원격대 1,610원('11)~2,684원('15)

2) 기준에 대한 해석

-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으로, ‘15년부터 100% 적용을 목표로 하여 ‘11년 60%, ‘12년 70%, ‘13년 80%, ‘14년 90%의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
-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7. 참고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참고 2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해석상 차이**

	문화부	비상대책위원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용허락을 얻어야 함 -단, 공정이용(미 저작권법 107조)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등은 저작권 제한의 일반규정인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규정(미 저작권법 107조)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위한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복제 가이드라인’은 교수가 연구, 강의 및 강의준비를 위해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일정 부분에 대해 1부 복제허용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생 1인당 1부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복제 허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등의 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만 허용 (보상금 지급) -원격수업은 현장 수업과 동시의 전송에 한하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기관과 대학에서 수업과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가능(저작권법 35조)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등의 수업목적의 복제·배포·전송 및 녹화·녹음물 사용 및 전송 허용 (보상금 지급) -단,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저작자의 저작물이 편집된 자료의 경우 성질상 단지 학교, 비영리교육, 재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시설이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 편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 허용(저작권법 46조) -사전 통지의무와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대학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저작물 이용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 어문저작물 1면 또는 200면 이상 저작물의 1% 이하 복제·전송 * 음악저작물은 10% 이상 이용 불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징수없는 공정이용으로 어문저작물 2면 이내, 저작물이 200면 이상인 경우 총 면수의 1% 이내 허용 -저작권 제한은 1) 보상금 징수없는 자유로운 공정이용 2) 이용은 허락되지만 보상금 징수 3) 권리자와 이용자간 자율적 이용계약에 의한 경우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참고 3

관계법령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경과와 쟁점에 대한 해명

윤 성 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1. 보상금제도 도입 취지

- 대학의 수업 과정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또한 대학이나 교수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권리자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임.
- 하나는, 법적인 지원 없이 직접 대학이 해당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권리자 단체와 협상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 이에 해당함. 이 방법은 권리자 단체가 모든 권리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경우에 이용허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다른 하나는, 보상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임. 일정한 이용에 대해 권리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하

고 보상금의 기준도 정해주어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법임. 또한 이 제도는 법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국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외국 저작권자도 포괄하게 되므로 보상금만 지불하면 범위 내에서의 모든 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음.

- 결국, 이 제도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로 2006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됨.

2. 그간의 추진경과, 대학측 의견 반영내용

□ 보상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 저작권법상 보상금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문화부는 보상금 산출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에 이용자와 권리자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전문기관(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 의뢰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 10여 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4월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바 있음.
 - 종량방식 단가기준 : 시장에서의 형성된 저작권료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 기준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시장가격의 10% 수준으로 적용
 - 포괄방식 단가기준 : 대학의 보상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대학에서의 평균적 저작물 이용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기준 금액을 산정함(학교의 저작물 이용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포괄방식이 불리하면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종량방식 이용 가능)
- 수년간의 절차를 거친 고시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는 보상금 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문화부는 2011년 9월에 대학 측과 복사전송권협회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한 바 있음. 이 회의에서 대학협

의회는 당초의 실태조사 표본크기가 적어서 보상금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대학협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를 해 볼 기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문화부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대학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짐.

- 이렇게 시작된 대교협 주관의 연구는 기존 문화부 주관의 연구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기대되었으나 2012년 1월 2일에 제출된 연구결과는 보상금 시행의 보류 또는 보상금 기준의 대폭 인하를 주장할 뿐,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도 없고, 당초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어떤 분석을 통해 보상금액이 현행에 비해 20% 미만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등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려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포괄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보상금 기준 금액을 최고 고시보다 30~40%, 연차별 조정계수도 적용할 경우 2011년의 경우 보상금 기준 금액이 최초 기준금액의 58%(일반대학) 인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였음.
 - 협의과정에서 대학의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보상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 산출근거의 불합리성, 대학교수 5만7000여명의 무료이용 동의 반영, 공정이용 반영 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반영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현재까지도 처음과 똑같은 내용만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상황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합리적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조정자의 위치인 문화부도 당연히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가 상반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라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문화부는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대한 당사자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보상금 기준을 상당히 낮추어 개정한 것임.

□ **보상금 산출기준에 공정 이용 부분 반영**

- 공정이용을 적용하면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이 대부분 무료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범주를 벗어날 경우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용료는 우리의 보상금 기준과 비교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임. 실제 한국의 복사전송권협회와 유사한 미국의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대학 등에서 징수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이해 관계자 즉 권리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오랜 기간 논의와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선행되어야함. 비대위가 문화부에 일방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대학이 이용 당사자로서 교육 목적에서의 공정이용 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권리자를 설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정책조정자로서 적극 중재해 나갈 용의가 있음.
- 공정이용은 권리자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등 범위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대학측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의미에서 권리자의 양해 하에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의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공정이용을 적용하더라도 이용허락을 하는 미국과 달리 이미 보상금으로 권리자가 한발 양보한 경우는 공정이용의 범위는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저작권자인 교수 5만 7천여 명의 무료 이용 동의 부분 반영**

- “저작권자인데도 동시에 교육 담당자인 대학교수 5만 7000여명이 자신의 저작물을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 이용에 동의한 부분을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협의과정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동의서에 무료 이용 대상 저작물, 이용기간, 권리이전 여부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 타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었음.
- 무료 이용 허락은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이고,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권리가 출판사 등에 이전된 경우도 있으므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함. 문화부는 이를 고려해 고시에 무료 이용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상금 수령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보상금 감액 산정 및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무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교수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측에 무료 이용 동의서를 받을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쳐 받았는지, 무료이용 동의서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무료 이용 동의서를 받을 당시 교수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되었는지 의심스러움

3.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저작권법 개정 의견에 대하여

□ 보상금 제도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위험성

- 보상금 제도는 대학 수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는 과장된 주장임.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도 권리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권리자,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보상금 제도는 국제조약에도 상응하며 다수의 국가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대학측의 이익에 지나치게 편향된 접근으로 생각함.

□ 대학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법 집행

- 저작물 이용이 가장 많은 대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이며, 금년 중 국가·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상금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참고로 초중고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음

□ 미분배 보상금 이용 규정의 위헌성

-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용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만 경과하면 수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미분배 금액을 공익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과도한 확대 해석임.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의 경우도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보상금 수령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부장관 승인하에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 분배 공고 3년 이후에도 보상금 수령단체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자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나타나거나 저작권자의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학 수업에서 저작물 무료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 대학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교육의 성격이 다르고, ▲ 저작권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 우려가 있고, ▲ 이미 우리나라는 낮은 보상금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

- 초·중·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적 성격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주목적인 반면 대학교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학교에서는 최신의 저작물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저작물의 이용이 많고, 이용되는 저작물의 양 또한 초·중·고에 비해 월등히 많음. 또한 초·중·고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반면, 대학교의 경우 일반 저작물을 사용하는 등 그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많이 다름

* 초·중·고의 경우 교과서 수록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을 이미 납부중

- 저작권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 우려

[저작권 제한의 한계(3단계 검사법, WTO/TRIPs협정)]
제13조(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이미 낮은 보상금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
 - (미국) 제한적으로 공정이용조항을 활용하고 있으나, 교육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미국 CCC의 경우 연간 2천억원을 대학 등에서 징수)
 - (독일) 대학에서 복제 및 배포는 이용허락 대상이며, 전송은 보상금 대상이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 이용이 매우 제한적
 - (호주) 보상금제도 도입, 보상금 기준은 학생 1인당 약 40,000원 수준
- 보상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권리자 이용자 모두 불편 초래
 - 대학은 개별 저작권단체와 협의 후 이용이 가능하나, 시장가격 수준의 높은 사용료 부담, 저작물 이용거절 등에 따른 각종 자료이용 위축 예상

4. 맺음말

- 특정한 몇몇 교재 위주로 진행되던 예전의 수업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널리 활용되는 최근의 대학수업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늘 가까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음. 대학 수업에서 교수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국내외의 각종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역할일 것임.

- 대학이 손쉽게 이러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상금 제도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저작권 사용료를 새로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이 너무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수, 학생들에게 저작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1년 7월 19일 인쇄

2011년 7월 19일 발행

발행인 : 이 기 우

발행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 소 : 100-953, 서울 중구 서소문로 38 (대우디오센터 7층)

TEL : (02) 364-1540

인 쇄 : 선명인쇄(주)

TEL : (02) 2268-4743
